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반도체 로드맵을 매년 작성해야 한다.

1. 중·장기 국방반도체 확보계획
2. 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목록
3. 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 목록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로드맵을 작성할 때 각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기업, 법인, 연구기관, 조직 및 단체 등이 제기한 과제를 반영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제1항제1호의 중·장기 국방반도체 확보계획에 포함된 기술들에 대한 과제기획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연구개발사업 수행자”라 한다)에게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사업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조(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요구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선정기준
3.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작성기준 또는 협약 이행능력 심사자료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자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 수행자를 둘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4조(연구개발사업비의 분담비율)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연구개발사업 수행자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담하는 연구개발사업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 기 간	
신청인	기관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사업유형	☐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 국방반도체를 직접 설계 또는 설계서비스를 제공				
	☐ 국방반도체 생산 또는 설계자산 위탁 생산 ☐ 국방반도체 패키징 또는 성능시험				
	☐ 국방반도체 소재 개발 또는 생산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 현황	요건		충족여부		세부내용 (증빙내용 요약)
	사업에 필요한 시설,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 보유		☐ 예 ☐ 아니오		
	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보유		☐ 예 ☐ 아니오		
	보안관리체계 보유		☐ 예 ☐ 아니오		
주요 사업 및 기술현황	주요 사업(제품) 내용				
	보유 기술 (핵심기술)				
	주요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주요 거래처 (납품처)				
시설, 생산 능력 및 보안사항 현황	주요 시설·장비 현황		보안관리책임자		
	연간 생산(처리) 능력		보안 인력 현황		
	주요 공정 (프로세스)		정보보호체계 현황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3.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4. 사업유형별 증빙자료(실적, 계약서, 납품실적서 등) 5. 시설, 장비 및 소프트웨어 현황 자료(배치도, 사진 등) 6. 기술인력 현황 및 자격 증빙자료 7. 보안관리체계 관련 증빙자료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2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20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자: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제5조(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신청의 서식)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6조(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서 발급의 서식)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서 발급의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7조(재정지원 등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승인 신청서 서식)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등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승인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8조(국방반도체 전략기술 판정 등)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판정 신청서 및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판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과 같다.

제9조(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기술품질원이 보유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에게 기술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0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 - 호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업유형 :

위 기관은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방반도체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방 위 사 업 청 장

직인

재산의 양도 등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
신청인	기관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유형	☐ 양도 ☐ 교환 ☐ 대여 ☐ 담보제공 ☐ 목적 외 사용	
	대상 재산 총괄	(재산의 명칭)	재산 소재지
	신청(예정) 일자		신청금액 (예정)
세부 신청내용	재산의 명칭·규격 및 취득현황	• 재산의 명칭 : • 규격 및 주요 사양 : • 취득일자 및 취득금액 : • 취득 방법(매입/제작/기타) : • 주요 용도(취득 당시) :	정부지원 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사업명 : • 지원 근거(관련 법령/사업 공고 등) : • 지원 형태(보조금/출연금/융자/기타) : • 지원 금액(총액) : 원 • 지원 비율(지원금/총 취득가) : %(/) • 지원 시기 :
	양도·교환· 대여·담보 제공 또는 목적 외 사용의 사유 및 목적	• 사유(필요성) : • 목적 : • 기대 효과 :	양도등의 상대방에 관한 사항 • 상대방(기관·기업명)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 관계(특수관계 여부 등) :
	양도 등에 따른 국방반도체 생산 및 공급 영향 검토 내용	• 생산·공급에 미치는 영향 요약 : • 대체 확보·조달 계획 : • 핵심역량·기술 유출 방지 대책 : • 공급망 안정성 유지 방안 : • 기타 영향 검토 의견 :	그 밖에 국방반도체 산업기반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재산 양도등 후에도 국방반도체 산업기반 유지·강화를 위해 이행할 계획(시설·장비 확보, 연구개발 지속, 고용 유지, 협력사 지원 등) : •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또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산 취득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검사·검수서 등) 2. 정부지원 관련 증빙자료(협약서, 교부결정 통지서 등) 3. 양도등 관련 계약서(안) 또는 계획서 4. 국방반도체 생산·공급 영향 검토 보고서(필요 시) 5. 기타 관련 자료
------	--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판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	
신청인	기관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진술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기술특성						

신청사유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유 기술의 특성·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수수료 없음
	2. 신청 대상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IP) 현황	
	3. 그 밖에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판정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제 - 호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판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신청기술:

귀 기관의 신청기술은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에 해당됨을 판정합니다.

판정 사유:

년 월 일

방 위 사 업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